



제429회 국회 (정기회)
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
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〉

■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9882호)

2025. 11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박 병 섭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문대림의원 등 16인
2. 제안연월일 : 2025. 4. 16.
3. 회부연월일 : 2025. 4. 17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,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또는 처벌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「형법」, 「공인노무사법」, 「건축사법」 등 비밀유지 의무를 수반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법에 비밀 엄수 조항에 수반하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.

이에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의2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 제76조(양벌규정) 법무사범인이나 법무사범인(유한)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, <u>제73조</u>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범인이나 법무사범인(유한)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u>제74조의2(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)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제76조(양벌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3조, 제74조의2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- 개정안은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27조¹⁾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(안 제74조의2 신설), 이를 제76조의 양벌규정에도 포함시켜 법무사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(안 제76조)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현행 법무사의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해 법 제48조에 따른 징계²⁾ 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, 다른 전문직역³⁾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, 법무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.

-
- 1) 「법무사법」 제27조(비밀누설 금지)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) 「법무사법」 제48조(징계처분)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
- 3) 「형법」 제317조(업무상비밀누설) ①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제사, 약종상, 조산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공증인,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- 「공인노무사법」 제14조(비밀 엄수)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(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)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
- 「건축사법」 제20조(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)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9조의3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5.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

법무사는 등기·공탁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사자에게 심각한 권리침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고, 현행법은 징계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무사의 비밀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만큼, 비밀누설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업무윤리 강화와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참고로, 다른 자격사의 경우에도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[다른 자격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]

법 률	형량 규정
변호사법(§112)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공인노무사법(§28①)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세무사법(§22①)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공인중개사법(§49①)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건축사법(§39의3)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○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.

법원행정처는 타 자격사에 관한 법률에도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개정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, 벌칙의 경중도 타 자격사와 비교할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유사 직역 자격사인 변호사법상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.

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은 법무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이견이 없고, 법정형 및 양벌규정 조항도 ‘형법’, ‘공인노무사법’, ‘건축사법’ 등 유사 법령과 비교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, 자격정지 등 형벌의 다양화와 함께 비밀 누설 행위를 법 제48조제1항의 명시적 징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문 의 처
02) 6788-5060